

제284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7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행정기획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72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8. 23.
- 회 부 일 : 2021. 8. 26.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²⁾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100세 시대 노인복지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하는 현대식 노인복지관이 필요함에 따라, 성북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함.

1)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건립계획

| 구분 |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 | | | |
|--------------|--|------|-----------|------------|-----|
| | 소재지 | 재산구분 | 대 상 | 금 액(천원) | 비 고 |
| 취득 (기부채납) | 성북구 동선동 4가 342번지 외 2필지 (340, 342, 343) | 건물 | 3,024.22㎡ | 13,156,000 | 신축 |
| | | 대지 | 708.70㎡ | | |
| | | 합계 | | 13,156,000 | |

○ 층별현황(안)

| 층별 | 공간구성 | 비고 |
|----------|---------------------------------|----|
| 지상 6층 | 다목적실(공연장), 지원봉사실, 동호회실 | |
| 지상 5층 | 경로식당, 편의시설 등 | |
| 지상 4층 | 다목적실(소상당), 송강의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 |
| 지상 3층 | 사무실, 일자리 종합상담 및 지원센터 | |
| 지상 2층 | 정보화교육장, 평생학습실(PC, 모바일 등), 프로그램실 | |
| 지상 1층 | 안내 데스크, 종합상황실, 커뮤니티홀, 북카페 | |
| 지하(1,2층) | 주차장 | |

※ 세부 공간구성은 추후 공사 기본·실시 설계 시 다양한 의견 반영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2019. 9.26. : 서울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 성북구 선정 및 건립비 지원(시비 80%, 구비 20%)
- 2020. 6.23. : 성북구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 2021. 6.23. : (서울시) 2021년 제4차 투자심사결과 적정
- 2021. 8.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성북구의회
- 2021.10~2013. 5 : 설계공모 및 공사 기본·실시 설계
- 2023. 5~2025. 9 : 착공 및 준공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³⁾제1항제1호 및 제37조⁴⁾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⁵⁾」

5. 추진배경

- 현재 운영 중인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종암동)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정릉3동)은 각각 성북구의 동부권과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부권역 거주 어르신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 신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성북구의 노인종합복지관 과부족률을 개선하고,
- 신규 노인종합복지관을 서남부권역에 건립함으로써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돈암1·2동, 안암동 거주 어르신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

6. 검토의견

2019년 기준으로 성북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면적(m²) 당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8.54명으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성북구의 서남권에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유자시설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각각 200%, 600%까지 가능